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2016.7.15.(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2016. 7. 15. 금. 15: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 영화진흥위원회,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I. 환영사/축사/인사말

1. 환영사	
1) 유은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2. 축사	
1) 이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
2) 유성엽(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9
3)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1
3. 인사말	
1) 김세훈(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13

II. 시민영상상영 및 사례발표

1. 시민영상 상영작 소개	15
2. 지역영상문화동호회 활동 사례발표	
1)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노인동아리 <부시맨>	21
2) 대구 경북 대학생 연합 동아리 <단디>	31

III. 지역영상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1. 발제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경과와 의미, 영상문화진흥과의 관계(손경년)	39
2) 지역영상문화 정책 현황과 활성화 과제(최성은)	67
2. 토론	
1) 제주지역 미디어센터 활동과 과제(고창균)	89
2)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의 역할(신효진)	95
3)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최성천)	105
4) 지역문화 아카이브 활성화를 기대하며(손동유)	111

●●● 환영사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먼저 오늘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 시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및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바야흐로 영상문화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과 영화관을 벗어나 손안의 휴대전화로도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기는 방식도 다양해져 3D, 4D를 넘어 이제는 VR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상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즐거움을 끊임없이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낸 영상을 단순히 소비하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직접 참여해 우리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며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참여’의 분위기가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도 지역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영상의 힘은 강합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기록을 남겨왔지만, 가장 최근에 등장한 영상이라는 매체는 제일 정확한 기록을 후대에 남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기록을 새겨 나가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영상문화,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될 오늘 토론회에서 유익하고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축하

국회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영화진흥위원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과 유은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17대 국회 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간사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류는 ‘대장금’을 필두로 막 시작하던 시기였고, 문화콘텐츠산업은 새싹이 갓 피어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새싹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뒷받침 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문화시대’를 여는 뜻깊은 토론회에 축하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문화콘텐츠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걸음마 단계였던 한류도 이제는 팝과 드라마를 넘어서 문학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장르까지 진화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이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의 초고속 진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하는 개인 디바이스의 혁신, 유튜브 등 콘텐츠가 무한 유통되는 플랫폼의 확대 등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국민들은 이제 단순한 문화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며 공유하는 문화생산자의 지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영상문화’입니다. 이제 시민이 영상을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합니다. 동네에는 영상문화동호회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작은영화제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패러다임이 관람에서 참여로 변화를 시작했고 그 변화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상산업의 시대에서 영상문화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화의 선봉에서 ‘새로운 영상문화시대’를 열고 계신 주인공들인 지역영상문화 동호회 구성원과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두 참여하여 ‘지역영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이기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오늘 토론회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또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온 의원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고견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또 다시 10년이 흐른 후, 오늘의 자리가 영상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연 역사적인 자리로 남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축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시행과 함께 국회-정부-민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유은혜 의원님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각 도시들은 창조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문화콘텐츠 등 각기 다른 이름과 형식으로 문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차세대 동력을 문화산업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 역시 다양한 문화산업과 연관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상산업은 최고의 성장산업으로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에도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나 지원정책에 있어 영상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추진한다거나 영상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우리나라의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하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산업은 산업적 가치는 물론 영상문화로서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더욱이 오늘날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콘텐츠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며 유통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접하고 콘텐츠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양한 영상문화를 균형성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유은혜 의원님이 작년에 대표 발의하신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개정되어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향유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영상산업과 영상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의 건립과 운영 지원을 비롯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지역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융성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영상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라며,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영상문화 관계자 여러분의 진지하고 열띤 논의와 소통을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유은혜 의원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인사말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세훈입니다.

현재 우리는 영상문화시대를 살고 있으며, 국민들은 영상문화의 소비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영상문화 향유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영상문화 활동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설립한 34개소의 지역 미디어센터와 24개소의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생활문화시설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영상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역영상문화진흥정책 수립에 대해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4일에 시행되는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비법 개정안’은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영상을 만들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영상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방안과 효율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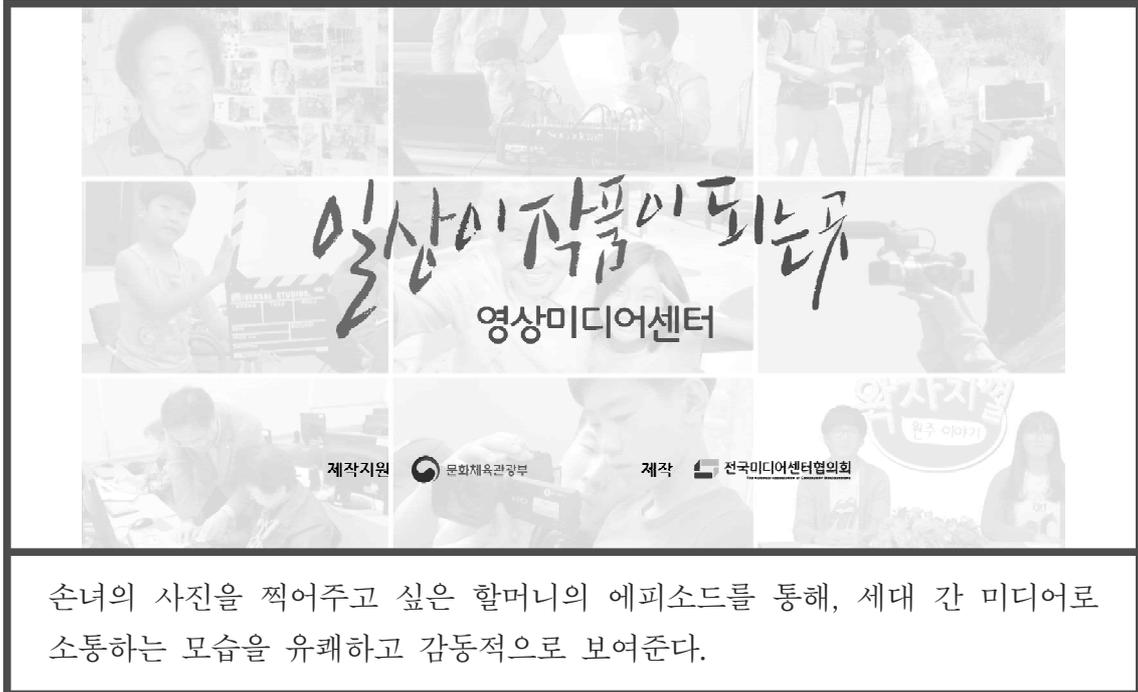
지역 및 공동체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영상 상영작 소개]



1. 미디어센터 홍보영상 (30초)



2. 시민(어린이,성인,노인) 제작영상

- 어린이 : 클레이 애니메이션 <평창 동계올림픽> (1분)



● 성인: 여성 다큐멘터리 <그들을 깨우는 방법> (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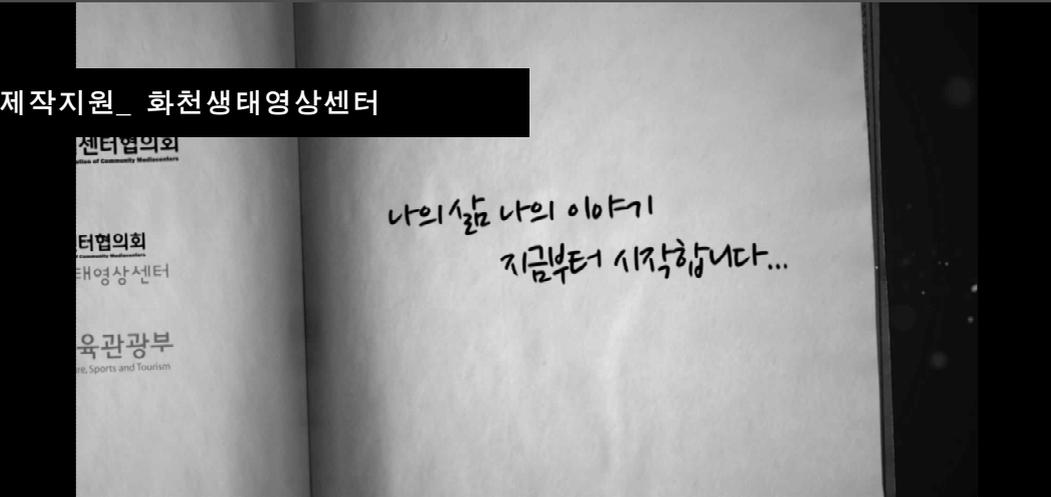
제작지원_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의 아침잠을 깨우는 주부(엄마)의 일상을 소재로 엄마가 직접 만든 영상이다. 아이들의 늦잠 자는 습관을 걱정하는 엄마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하는 아이들과의 갈등이 만들어내는 소소하고 발랄한 작품이다.

● 노인: 영상자서전 모음 <나의 삶, 나의이야기> (2분15초)

제작지원_ 화천생태영상센터



강원도 화천군 산골에 살고계시는 노인들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영상모음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는 아들딸들을 그리워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우리네 어르신이자 어버이들의 사진 속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담긴 휴먼에세이 형식의 작품이다.

3. 지역관광명소 TV CF (30초*5편)



미디어센터	관광지	기획/제작 의도
진주 시민미디어 센터	통영 서피랑	박경리의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지역인 서피랑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촬영과 편집 방법을 배워 주요 관광 스팟과 이색적인 먹거리를 소개한다.
순천시 영상미디어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古Go장 순천>의 타이틀로, 순천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고, 특색있는 관광 명소

<p>센터 두드림</p>	<p>낙안읍성마을 순천드라마세트장 아랫장 야시장 송광사 / 선암사</p>	<p>를 배경으로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여행을 컨셉으로 제작했다.</p>
<p>원주 영상미디어 센터</p>	<p>치악산/구룡사 거둔사지 용소막 성당 원주 미로예술시장</p>	<p>지역에 콘텐츠(스토리)를 입혀, 원주지역의 명소에 대해 새로운 옷을 입히고자 한다.</p>
<p>강릉시 영상미디어 센터</p>	<p>안목커피거리 안목해변</p>	<p>대한민국 100대 관광지에 이름을 올린 안목 커피거리의 홍보 영상을 제작 한다.</p>
<p>대구 미디어핀다</p>	<p>중구 북성로 일대</p>	<p>중구 북성로는 주변 도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젊은 예술가 및 상인들의 관점에서 새롭고, 에너지 넘치며, 창조적인 지역이자 새로운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 점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만들고자 한다.</p>

[사례 발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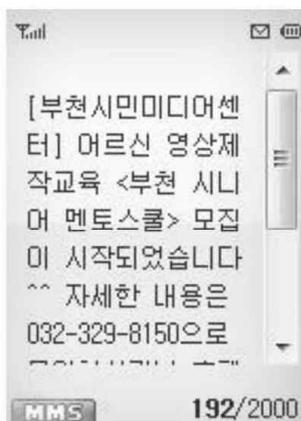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노인동아리
부시맨



꽃보다 향기로운 삶



첫 만남



2014년 3월에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시니어 미디어교육생을
모집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잘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기조기 찍어바르고 왔다고 하니
막 웃드군요...

후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괜히 들어왔다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첫 작품

...태어나서 여섯살까지 길러준 우리 손주

"은성이의 성장일기"를 영상으로 만들자고 결정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내 스스로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자신감, 의욕, 활력, 건강을
찾았습니다...



...치매검사를 받을 때
묻는 말에 100% 답을 못해서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꿈

...멋있고 훌륭한 영상을 만들어
이웃과 공유도 하고
젊은이들과
숨씨도 겨뤄보고 싶습니다...



...시니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문화꽃을 피우고자 하는 우리들이
용기를 얻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발표 2.]

대구 경북 대학생 연합 동아리
단디





대구경북대학생영상연합동아리 단 디

대구 경북 유일의 대학생 영상 연합 동아리 '단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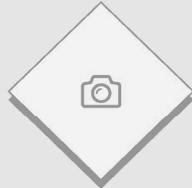


- 1 2012년 시작, 현재 5기 활동 중
- 2 1년 1기수제 운영
- 3 영상을 좋아하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
- 4 매년 약 7개의 대학에서 25명 내외 대학생 참여
- 5 자체적인 커리큘럼에 따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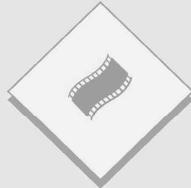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한 '단디'



자발적 운영



교육&장비 지원



풍부한 영상 제작



체계적 시스템

단디 내부 자발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로부터 영상 제작에 관한 지원을 받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3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한 '단디'



단디 활동 대학생들의 창작 영상
뮤직비디오 / 드라마 /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 에세이 / 패러디 영상 등



대학생 제작 영상 방영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열린TV 희망세상

4

영상에 대한 열정을 뽐내는 순수창작의 공간, 단디

2기 제작 단편영화
〈순정만화〉



3,4기 합동 유닛 제작 장편 다큐영화
〈0.36 프로젝트〉



1기 제작 뮤직비디오
〈행성사이에〉

3기 제작 단편영화
〈비밀번호 찾기〉

5

우리주변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내는 공간, 단디

3기 제작 다큐멘터리
〈김광석 길 : 거리에서〉



4기 제작 다큐멘터리
〈시인 보호 구역〉



2기 제작 다큐멘터리
〈연희단, 극단에 살다〉

3기 제작 다큐멘터리
〈북성로 3.0〉

6

지역 대학생들이 영상으로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공간, **단디**

서로 다른 대학, 다른 전공

✓ 전공에 관계없이 영상에 대한 열정과 패기만으로 모인 동아리



선·후배 기수간의 소통

✓ 영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와 선·후배 기수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동아리

자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 스스로 진행하는 자체적인 커리큘럼



참신한 아이디어의 집합

✓ 더 나은 영상을 위한 Creative한 아이디어 도출

7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예비 영상인들의 공간, **단디**



- 지역의 다양한 미디어·문화 활동에 활동가 / 제작자로 참여
- 지역 예술가와 협동하는 다 규모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진행
-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소재를 조명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8

차세대 영상인으로 성장하는 공간, **단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제작
& 제작 현장에서의 경험 습득



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 / 촬영 / 편집 공부
& 미디어와 영상에 대한 이해



자체평가 / 내부 시사회 / 상영회
등을 통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키워나감

9

준비된 영상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 ✓ 독립영화, 예술영화, 관련 도서 등에 대한 문화적 지원
- ✓ 차세대 영상인으로 성장해가는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는 현직 전문 영상인의 특강 지원
- ✓ 오직 대학생만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대학생 영화제' 와 같은 영상제 기획
- ✓ 예비 영상인들이 대학 교과과정 밖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영상 및 미디어 기관의 폭 넓은 인턴십 제도 구축



10

앞으로 단디가 나아갈 미래

- 1 더 많은 대학생 영상인들의 참여 유도
- 2 수료하는 모든 인원이 1인미디어가 가능
- 3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상 활동
- 4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영상 제작
- 5 크고 작은 공모전에 출품 및 입상



1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경과와 의미,
영상문화진흥과의 관계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I.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과 의미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전(vision)’의 사전적 정의는 ‘장기적으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 목표, 사업 전개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경영 구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 목표, 사업 전개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국민이 공유하는 국가경영구상’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법(law)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법칙으로서의 사회규범’인 법을 통해 국가는 가치관, 이념을 기반으로 전략과 사업 계획 및 실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공유하는 국가경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영을 위해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이에 따른 구상, 기획, 세부계획 등을 수립, 합법적 수단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때 우리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정책(policy)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이해와 적용은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21세기에 있어서의 법의 역할은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국가권능의 확대와 이에 따른 사적 영역의 보장 즉, 통제와 자유를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많은 법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통제를 적절히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와 법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인간을 위한 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우리나라 문화비전 흐름 또한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나 고급예술 중심에서([문화예술진흥법]) ‘인간을 위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 다시 말해 ‘중앙-지방’이 아닌 ‘지역’의 관점, 공급자 중심에서 능동적 수요자/주체자 중심의 서비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양한 시민사

회조직들의 자발적,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협치체계(거버넌스) 등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 제정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지역문화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거나 진흥을 위한 법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문화 분야 관련법들은 대체로 규제보다는 진흥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정책은 여러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수립에서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분	문화정책 가치의 변화	주요정책영역
해방 이후 - 제4 공화국 (1945-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체성 확립과 민족문화창조 - 문예진흥과 경제발전의 연계 	문화유산, 전통문화
제5, 6 공화국 (1981-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역량 제고 - 문화생활기반 조성 	예술, 문화유산, 전통문화 , 문화생활, 지역문화시설건립, 통일문화
문민정부 (1993-19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 증진 - 우리문화의 세계화 	문화복지 , 국제문화교류, 예술, 문화유산, 전통문화
국민의 정부 (1998.2-20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문화국가 -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산업 , 문화복지, 예술, 국제 및 남북문화교류, 문화유산, 전통문화
참여정부 (2003.2-20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참여, 분권기반 창의한국 	문화예술교육 , 지역문화, 문화복지, 문화산업, 예술,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 전통

		문화
이명박정부 (2008.2-20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일자리 창출 	콘텐츠산업, 문화기술,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예술,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 전통문화
박근혜정부 (2013.2-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삶과 국민행복 - 문화융성 	문화협업사업, 자발적 문화영역, 국제문화교류, 콘텐츠산업, 문화기술,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유산, 전통문화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5), 「충남문화재단중장기발전계획」, p.72, 임학순, 채경진(2013), “새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창출 및 발전방안” 등]

1. 문화예술진흥법

1972년 8월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 및 행정의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제1장 제1조)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에 관한 것(제2장 제5조),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에 관한 조항(제2장 제8조) 등과 함께, 제3장은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에 관한 것으로, 12조 문화강좌설치, 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14조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15조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15조의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4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며, 제5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설립 및 정관,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직무, 성과평가,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개정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추가됨으로써 전국의 문예회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진흥법]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적, 대상, 과업 등과 관련한 문화기본법의 역할을 해왔으며, 문화예술진흥 관련 시책 강구 의무와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한 재원조성의 의무 및 국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시설이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2005년 12월 국회에 통과, 2012년에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의 예술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민의 문화감수성의 증대와 예술수요자를 넘어서서 능동적인 창작자로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제1장 제1조)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습니다. 제1장 제2조(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뜻합니다.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의미, 문화예술교육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3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제2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에 관한 것, 제3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것, 제4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2월 17일 개정된 제5장은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5장 제28조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에 관하여, 제31조는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에 관하여, 제32조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적 역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면서 건전한 문화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의의는 모든 시민이 문화향유를 위한 기초적인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발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문화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되어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상생활문화를 포괄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3. 문화기본법

2013년 12월 10일 [문화기본법]이 제정,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화기본법]의 목적(제1조)을 살펴보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화기본법]의 제정 의미는 ‘문화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 정책으로 확대하려는 것’¹⁾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체계²⁾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문화계 및 문화정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영역별 법률이 아닌 문화정책의 가치체계, 대상, 정책방향 등을 포괄하는 ‘문화 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의 필요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대상영역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여가문화, 문화복지, 문화다양성 등 새로운 영역과 목표, 그에 따른 조직, 인력 등에 대한 대응요구가 있었고,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고려할

1) [문화기본법(안)] 검토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수, 2013.6
 2) 위의 자료, 관광분야(관광기본법 등), 체육분야(국민체육진흥법 등) 별도

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했던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국민의 생활문화 속에서의 향유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줄곧 있었습니다. [문화기본법]은 이러한 요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문화적 권리의 보장’(문화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을 보면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5조에서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및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앞으로 문화정책의 위상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³⁾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등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문화권 신장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3) [문화기본법]에서는 기본원칙으로 지켜야 할 가치로 문화다양성, 자율성, 창조성, 문화역량, 문화활동,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의 가치, 문화의 국제교류 등을 들고 있다.

4.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은 2000년대 초반, 문화예술계에서 지역문화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01년 정부는 이러한 요구의 중요성을 수용하여 <지역문화의 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후 ‘백가쟁명’, ‘백화제방’ 등의 지역문화대토론회가 진행되었고 200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위’가 결성되면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17대, 18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되었으나 법제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병석 의원과 도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가지 안과 김장실 의원이 제안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의 기본원칙(제3조)에 근거한 책무(제4조)를 지게 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의 사업(제8조, 제9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제10조), 지역문화실태조사(제11조),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관리(제16조-18조),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제19조-제20조) 등의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문화재단⁴⁾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이후 현재 70개의 지역문화재단(2016년 기준, 광역 13개/기초 57개)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생산 및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으로 지역문화재단을 지속적으로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중앙-광역-기초의 거버넌스 정립 및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

4)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설립한 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은 설립근거,성격,주요기능을 가지고 있다.

- 설립근거 : 문화예술진흥법(광역문화재단), 지자체조례, 민법 등
- 성격 : 지역문화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 주요기능 : 지역문화정책수립 및 생활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

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존에 활동해 온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들(단체), 문화기반시설 등과 지역문화재단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 요구가 현실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5.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갖는 의의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의미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구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문화민주주의, 문화자치 등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중요성'이 정책 범위 안으로 들어와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원, 인력, 시설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실효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됨에 따라 주민들이 수혜라는 입장에서 제공되던 수동적인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재할적인 복지의 요구, 그리고 문화예술 및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주체적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법] 제2장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과 시책 강구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①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 쌓아온 모든 것(총체적 개념), ② 일상생활양식(생활양식내용이 강조되며 집단이나 국가 간의 차이가 중요시됨), ③ 관념이나 의미체계(의미내용이 강조되며 집단이나 국가 간의 차이가 중요시되기도 하고 의미의 구축 또는 구성과정이 중요시되기도 함), ④ 예술

이나 여가의 창조적 활동 등으로 정의됩니다.⁵⁾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문화영역의 ‘일상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이 보다 창의적인 사회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문화적 욕구 또한 생활문화 속에서 의식주와 함께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기본법]에서 명시한 ‘문화권’은 ‘시민(주민)들의 문화 선택권’과 ‘향수권’과 함께 ‘문화정책 결정권’과 ‘문화 생산권’을 모두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문화정책결정의 민주화’는 ‘시민(주민)들 각자가 문화적 주권을 누리는 한층 적극적인 문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민주화와 대중들의 미시적인 감수성의 차이와 서로 다른 취향을 인정해주는 **문화민주주의**는 지역에서의 문화정책 및 예술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주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⁶⁾

지역문화를 ‘어떤 공간 내의 문화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이해한다면, 공유되는 과정의 역사성이 지역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를 위한 문화’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적용되는바, 이때 정책과제는 문화 수혜범위의 확대와 문화공급의 실질적인 증가 등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 의한 문화’는 소수 혹은 특정계층의 지배문화나 고급 문화 중심이 아니라 모든 시민으로부터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적극적인 문화참여를 전제로 공공문화시설의 형성과 이용에 의한 공개적인 문화

5) 여기에서 더 나아가 Jean-Marie Moecki(1982)는 문화의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것은 문화 예술작품이나 인문적 성과들에의 접근과 동시에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생활양식을 위한 욕구, 지식의 획득, 정복·소유해야 하는 영토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웃 그리고 자연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6) 최근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강조되는 이유는 전문예술인들에 의해 문화 예술이 창조되고 그 결과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문화의 민주화’에서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문화개발이 가능한 ‘문화민주주의’로의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트렌드와 밀착된 새로운 예술 형식과 참여방식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의 요구가 커지거나, 마찬가지로 문화적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접근성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적 기반이 된다.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시민적 연대성의 기본바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일상화된 문화’는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의 생활세계로부터 특별하게 취해야 하는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개념과 시민의 관심사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형태나 의미형태들을 일상적인 문화적 혜택이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의미하며, 여기서는 **생활문화(예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와 영상문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II. 생활문화와 영상문화

생활문화 활동은 일차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의 소통(communication), 교류(exchange)와 협력(cooperation), 연대(solidarity), 환대(hospitality) 등은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며, 따라서 ‘친밀한 개인의 사적 사교성’이 아닌 ‘함께 여럿이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본다면, 단순히 동호회 활동을 참여한 사람들보다 동호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⁷⁾ 이런 측면이 생활문화정책에 있어서 지원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7) 방주영, 「생활예술인의 사회성 여가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석사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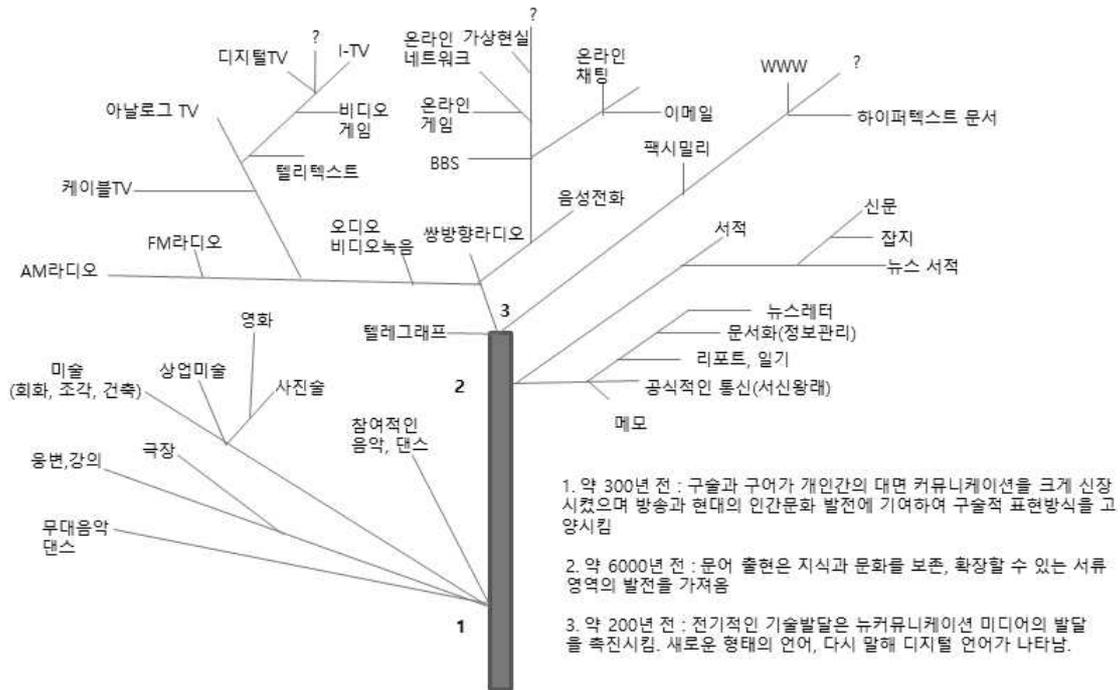
다른 한편, 생활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참여예술로서의 효용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예술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창의성, 혁신성, 소통능력, 독창성, 응용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감정분출과 표현을 통해 생활세계 속에서 가치판단과 탐구, 스스로의 의사결정력 등의 향상에 도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축제나 예술행사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 경험의 공유, 자신감, 성취감 등이 고양되면서 공동체의 조화와 창의적 발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상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지역미디어센터

우리나라에서 지역미디어센터가 설립·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 선도적인 한 두 개의 미디어센터가 현재 30여 개에 이르렀으며, 이중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회원으로 29개의 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역미디어센터는 시민제작 콘텐츠의 생산기지이자 지역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공공문화기반시설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 이론적 배경이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 공공영역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담론적 공간이자 사회적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개방성(openness)’인데 이는 특정인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고급정보들을 시민들에게도 공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정책결정행위에 의견을 반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어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가계도]



[출처 : 로저 피들러(1999), 『미디어모포시스』, 커뮤니케이션북스, p.64]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공간·인력·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목해 본다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입법취지, 즉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국가 실현의 입법취지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생활문화시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8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미디어시설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부 칙

-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8호 ‘생활문화시설범위에 관한 고시’를 보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3호의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따른다면 생활문화시설의 하나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공간 및 시설, 인력운용, 사업, 재정, 조례 등 제도적 측면의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지역문화진흥에 있어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의 의의

다음으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내용(2016년 2월 3일 개정, 2016년 8월 4일 시행)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은 총 5개 조항의 본문 개정과 1개의 부칙 개정이며, 본문 개정안은 제1조(목적),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이며, 부칙 개정안은 제1조(시행일)입니다.

제1조(목적)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현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인력의 양성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인력의 양성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11.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의2.지역 영상문화의 증진(신설)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p>[현행]</p> <p>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 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 	<p>[개정]</p> <p>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 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	---

<p>의 관리</p> <p>11. 삭제 <2009.5.8.></p> <p>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p> <p>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p> <p>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p> <p>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p> <p>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관리</p> <p>11. 삭제 <2009.5.8.></p> <p>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p> <p>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p> <p>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p> <p>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p> <p>15의2. 지역 영상문화의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신설)</p> <p>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

제25조(기금의 용도)

<p>[현행]</p> <p>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p> <p>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p> <p>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p> <p>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p> <p>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p> <p>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p> <p>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p>	<p>[개정]</p> <p>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p> <p>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p> <p>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p> <p>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p> <p>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p> <p>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p> <p>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p>
---	--

<p>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p> <p>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p> <p>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p> <p>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p> <p>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p> <p>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p> <p>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p> <p>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p> <p>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p> <p>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p>	<p>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p> <p>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p> <p>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p> <p>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p> <p>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p> <p>8의3. 지역 영상문화의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신설)</p> <p>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p> <p>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p> <p>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p> <p>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p> <p>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p>
--	--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p>[현행]</p> <p>제38조의2(지역 영화 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p>	<p>[개정]</p> <p>제38조의2(지역 영화 환경 개선 등)(개정)</p> <p>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p>
---	---

<p>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 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 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항으로 개정)</p> <p>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p>
--	--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상산업을 촉진함으로써’의 조항이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로 바뀜에 따라 지역영상문화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감정의 긍정적 순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이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영상문화가 기여한다’는 인식과 함께 영상산업의 성장 근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영상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와 ‘문화산업’은 서로 균형을 갖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달랐고 추구하는 방향 또한 달랐습니다. 그러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문화기본법]에서의 국민의 ‘문화권’ 신장과 더불어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역량 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지역문화 발굴 창조 등의 영역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하나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 되었고, 따라서 문화와 문화산업의 보완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재원조성의 측면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역영상문화 사업지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유은혜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으로부터 걷히고 있는 영화발전기금이 지난 5년(2010~2014년)간 지역지원 비율을 보면 불과 2.17%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

흥에관한법률] 개정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영상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영화발전기금의 지역지원 비율이 높아진다면 지역주민(전 국민중심),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영상문화 증진의 토대가 보다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서의 지역영상문화사업

법 개정에 따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역영상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역영상문화는 지역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양식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문화적 실천, 그리고 지역민들의 욕망과 감정구조를 함께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일상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재현 매체와 재현 환경이 있어야 하며, 재현 환경에는 영상교육체계에서 제작 매뉴얼, 그리고 상영공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지역의 행정 체계 조직 마련도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역영상문화는 특정인이나 소수 엘리트들의 독점대상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개념 설정이 중요합니다. 8)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 하위과제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의 차원으로 지역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영상문화증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역문화 역량 강화 영역

- 지역의 영상문화 창조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영역으로 활용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조성모델의 연계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8) 영화진흥위원회(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연구”

2)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영역

- 소규모 및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에 영상미디어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작은미디어센터를 연계 조성,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문화접근성 확보

※ 사례 : 강화군의 경우 작은영화관+작은미디어센터의 복합모델로 개관 준비 중이며, 경북 의성군도 동일모델로 설립 추진 중,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경우, 전라북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전북지역 작은영화관 운영 지자체 대상 영화(UCC) 제작교육을 수행 중임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영역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받은 지역민이 디지털미디어장비를 통해 지역민의 삶에 담긴 다양한 스토리를 채집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아카이브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원천자료를 축적하는 참여적 사업모델 운영

※ 화천생태영상센터의 ‘어르신 영상자서전,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사업 수행 중(참고1)

※ 미국의 storycorps.org, 영국의 스토리클럽 사례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육성을 위한 콘텐츠스페이스 구축을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델 창출 가능

4)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기반 생활문화활성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형 지역문화콘텐츠 구축
- 영상·미디어 제작장비 및 스튜디오 등 시설을 갖추고 주민대상 영상·미디어·문화활동 지원
- 문화콘텐츠 유통 기반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20개, 작은영화관 약 30여 개소, 지역문화시설의 상영 공간
- 채널(PP) : KBS Prime, 예술TV Arte, 아리랑TV, 엠비씨넷 등 문화관련 PP
-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시민참여 PP 및 다수 다큐멘터리 전문 PP
- 주민참여방송(지상파, 케이블 등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소출력 공동체라디오방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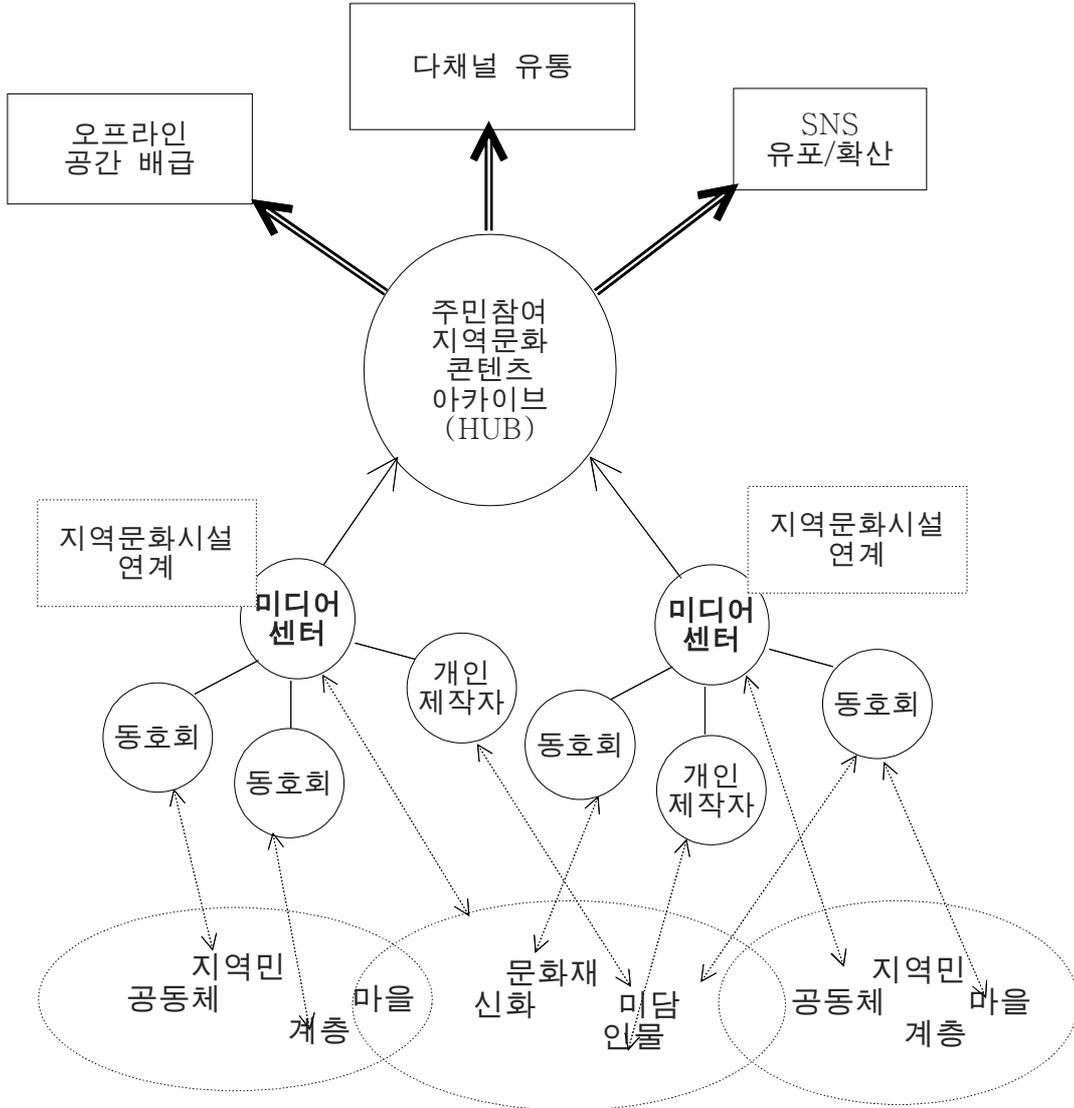
- 마을미디어사업(마을방송국-온라인, 팟캐스트 등 활용)
- IPTV오픈채널 : KT 올레TV 789번 내고향TV와 같은 오픈채널
- 주민참여형 지역문화콘텐츠생산 : 화천생태영상센터의 지역 노인대상 영상자서전제작 사업,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와 김동명문학관 연계 ‘문학+미디어’ 사업,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청소년 대상 제주어(제주방언)로 영화제작교육, 제주해녀(제주의 고유한 문화원형)에 대한 영상 제작교육 사업, 성남미디어센터의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웹진 제작교육 사업,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청소년 대상 ‘DMZ 다큐멘터리 제작교실’, 지적장애인과 함께 한 ‘영상도 해냄’, 노인대상 ‘부(천)시(니어)멘(토스쿨)’ 사업 등

5) 지역문화콘텐츠 생산-유통체계 구축

- 영역별 구분

구분	내용	비고
콘텐츠 원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유산, 명소 등 ■ 지역 신화, 민담, 전설, 미담, 인물 등 ■ 지역민(노인) 삶의 스토리 	
매개 : 지역영상동아리, 미디어교육 강사, 지역영화인 등		
콘텐츠 제작지원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제작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 활용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문화원, 문학관,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과 연계 ■ 콘텐츠 제작교육, 콘텐츠 취합 및 재가공 활동 포함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스페이스 등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시설과 연계 방안 필요
매개1 : 지역문화콘텐츠 온라인플랫폼 구축(아카이브/허브)		
매개2 : 주민참여형 지역문화콘텐츠생산자 협동조합 등 육성 가능		
콘텐츠 유통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상영 등 배급 ■ 인터넷, SNS 등 유포 ■ 채널 및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유통 	지역문화콘텐츠 저작권 정책 수립 필요

- 생산-유통체계 개념도



- 기대효과

- : 지역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생산·유통 활성화
- : 지역문화시설 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
- : 융복합형·주민참여형 지역문화콘텐츠활성화 사업모델 창출
- : 지역문화콘텐츠 생산 및 유통 관련 창조기업 육성
- : 지역문화자원의 정보 및 공유(유통)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Ⅲ. 마무리하며

“기술혁신은 전례 없는 규모의 권력투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나라의 거대통신 산업들은 21세기의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누가 통제할 것인지를 둘러싼 전투를 치르는 데 여념이 없다. …… 이러한 발전은 독립 비디오와 영화제작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독립제작집단은 보다 확대된 접근 가능성과 기금 혜택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전자 미디어 시스템의 가장자리로 훨씬 더 밀려나게 될 것이다.”⁹⁾ 21세기에 진입할 때 미국의 학자 데이비드 트렌드가 이러한 진단을 하였지만,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관점만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대신, 관점이라는 문제 자체를 핵심적이고 공공연한 주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다양성과 자유로운 논쟁을 억압하지 않고 활발하게 고양시키는 환경을 어떻게 창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며,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합니다. 문화민주주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독점적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개인의 감성을 공적공간에서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영상문화의 증진의 의미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리터러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문화권 정립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문화진흥과 영상문화와 관련한 법체계는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향유권, 삶 속에서의 생활문화의 일상화, 시민활동의 다양성, 문화생산 및 정책참여 및 결정권 등과 관련하여 법과 법과의 정합성,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 또한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9) 데이비드 트렌드(2001), 『문화민주주의-정치, 미디어, 뉴테크놀로지』, 고동현·양지영 옮김, 한울, p. 183, Linda Chavez, "Demystifying Multiculturalism," National Review 156, No.3, Feb. 21, 1994, p.30

● 참고문헌

- 강윤주 외, 「생활문화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조현성 외, 「문화동호회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손경년 외, 「생활밀착형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컨설팅」, 2013
- 손경년, 토론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15
- 전병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방안」, 2014
- 김규원, 「지역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2014
- 인천문화재단 공동체 포럼, 「이곳에 함께 살기 위하여」, 2014
- 양혜원, 특별과제- 「문화가 있는 날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상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 2015
- 영화진흥위원회,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2015
- 유은혜,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2016

[발제 2.]

지역영상문화 정책현황과
활성화 과제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I. 들어가며

- 문화정책에 있어 지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정책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지역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등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2014년 7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분권 시대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 지역문화진흥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21세기 중요한 문화요소인 영상문화에 대해서도 지역관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영상매체는 현대 사회의 시대 언어이자 중요한 문화이다.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변화는 영상문화의 확장과 다변화를 가져왔다. 영화(영상)감상, 영상제작, 영상미디어교육 등 지역민의 참여적 영상문화 활동은 보편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지역밀착형 영상문화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다.
-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문화 특히 지역 영상문화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과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담아내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행구조, 재정, 사업 등에 있어 보완점이 존재한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구조, 재정,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역영상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현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체계와 재정, 사업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영상문화활성화를 위한 실행구조로서 지역민의 영상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미디어센터를 중요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영상)문화정책과 지역

●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이 과거 국가와 시장 중심에서 지역과 시민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
- 지역문화는 과거 국가의 한 부분, 주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그 자체로서 중요해짐.
- “중심 & 주변” 전통적 이분법 시각에서 벗어나는 탈중심적 관점 등장과 지역을 전지구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글로벌리즘(globalism)’ 관점 대두

● 지역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이유: 주체, 공간, 콘텐츠에 대한 관점의 변화

1) 주체

- 생산과 소비의 주체 변화 (문화생비자)
 - : 일반시민이 문화소비의 대상에서 문화 창조의 주체로 진화. 이미 시민(주민)들의 의식과 욕구는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화 창조의 주체로 진화되고 있음
 - : 지역 역시 문화생산과 소비의 중요한 주체이며, 다양한 수요와 욕구가 존재함
 - : 사회적, 제도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와 창조적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시대로 변화
- 운영의 주체 변화 (문화거버넌스)
 - : 문화정책과 실행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주체로서 민간영역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짐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요구

2) 공간

- 지역 나아가 생활공간이 문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 : 일상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지역의 기본단위이며 근거지
 - : 동네는 정책적으로도 장소에 기초한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공간단위이며,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공간적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공공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추세임
- 문화정책 영역에 생활권에 근거한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의 비중 높아짐
- 마을공동체미디어 등 지역영상문화활동에서도 일상의 중심이 되는 마을단위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3) 콘텐츠

- 다양성
 - : 콘텐츠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 발굴과 지원 중요
- 지역민의 문화콘텐츠향유
 - : 콘텐츠 향유는 콘텐츠의 소비나 이용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의미. 따라서 콘텐츠를 산업정책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포괄적인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하이퍼로컬과 참여의 중요성 대두

- 넓은 범위의 지역성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최근에는 생활문화 공간과 같은 하이퍼로컬(좁은 범위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수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하이퍼로컬은 지역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
 - : 지역공동체의 삶과 지역민 간의 협력, 지역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하이퍼로컬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다.
- 최근 영국의 문화정책에서도 하이퍼로컬의 중요성 강조
- 지역민의 직접제작과 참여는 교육으로부터 시작

● 따라서 지역문화정책에 있어서 하이퍼로컬과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식이 산업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

- 지역문화발전과 진흥에 대한 정책적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주로 산업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산업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의 균형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

Ⅲ. 지역영상문화정책현황

1) 관련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 현재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는 법적효력이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가 유일함. 해당 고시의 검토기한은 2017년 10월 24일임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8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미디어시설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4.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부 칙

-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

-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비전에 따른 방향 제시 부족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적 근거가 장 관고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상향 규정이 필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영상진흥기본법

- 영상진흥기본법은 영화진흥법이 영비법으로 개정되면서 제정됨(2007년):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이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한 콘텐츠인데도,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의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 규정해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2016년 8월 4일 시행)을 통해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위한 보다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

<표> 영상문화 관련 법률

법률	내용
영상진흥기 본법	<p>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p> <p>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자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p>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p> <p>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p> <p>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5.5.18.]</p>
	<p>제38조의2(지역 영화 환경 개선 등)</p> <p>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2016년 8월 4일 시행)</p>

*출처: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자료집 내용 보완

● 지역영상문화정책 지원 및 실행조직현황

현재 지역에서 영상문화 활동과 관련된 지원 및 실행 조직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영상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있으나, 본 글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주로 하는 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영상미디어센터

- 비영리 영상문화 지원 시설이자 실행 주체, 지역 간 영상문화 불평등 해소 및 지역주민의 미디어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역의 영상문화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현황

2000~04년 개관	2005 년 개관	2006 년 개관	2007 년 개관	2008 년 개관	2009 년 개관	2010 년 개관	2011 년 개관	2012 년 개관	2014 년 개관	2015 년 개관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센터 2000년 2월 서울시	목포 1월 MBC	대구 6월 MBC	광주 6월 방송위	제천 11월 문화부	원주 4월 문화부	부천 2월 문화부	고양 4월 문화부	서울영 상 미디어 센터 2월 영진위	수원 3월 문화 부	인천 (강화) 2월 문화부

미디어트 2002년 5월 민간	전주 1월 MBC	제주 7월 문화부	대구 4월 문화부	천안 9월 문화부	익산 7월 문화부	강릉 4월 문화부	순천 11월 문화부	성남 12월 문화부	강원 7월 방통위	서울 9월 방통위
경남(창원) 2003년 11월 MBC	전주 8월 영진위	울산 10월 MBC	인천 (남구) 9월 문화부	안동 12월 문화부				화천 10월 화천군	대전 7월 방통위	서울 은평 9월 은평구
오 재미동 2004년 1월 서울시	김해 11월 문화부							옥천 12월 옥천군	인천 8월 방통위	양산 11월 양산시
아리랑 2004년 5월 서울 성북구	부산 11월 방송위								서천 10월 서천군	
서울 강서구 2004년 5월 영진위-> 강서구										
진주 2004년 5월 민간										

<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 현황

설립주체	운영주체		센터명
문화체육 관광부 (15개소)	영상 위원회 계열	(사)제주영상위원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청풍영상위원회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진흥원 계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재단 계열	(재)김해문화재단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재)강릉문화재단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재)수원청소년육성재단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민간 단체	남구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원주민예총/원주시민영상 협의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사)삼동청소년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방송통신 위원회 (5개소)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 진흥회 (5개소)	지역MBC 등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 위원회 (2개소)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사)전북미디어문화연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지방 자치 단체 (7 개 소)	서울시	(사)서울영상위원회	총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성북구	(재)성북문화재단	아리랑미디어센터
	강서구	강서구청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서울시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서천군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서천미디어문화센터
	화천군	(사)관악공동체라디오	화천생태영상센터
	옥천군	옥천군청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민간 (2개소)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출처: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자료집, 재인용

2) 작은영화관

- 주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개봉영화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다양성 영화 상영 및 감상 교육프로그램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전북지역의 경우는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주민대상의 영화(영상)제작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기도 함

<표> 작은영화관 설립현황

번호	광역시도	기초단체	작은영화관	개관년도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작은영화관	2015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알프스시네마	2015
3	강원도	홍천군	홍천시네마	2014
4		화천군	산천어시네마	2015
5		영월군	영월시네마	2015
6		평창군	평창시네마	2015
7	충청남도	서천군	기별포영화관	2015
8	전라북도	장수군	한누리시네마	2010
9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2013
10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2013
11		무주군	무주산골영화관	2014
12		고창군	동리시네마	2014
13		부안군	마실영화관	2014
14		완주군	완주휴시네마	2014
15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2015
16		순창군	천재의공간 영화산책	2015
17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작은영화관	2015
18		고흥군	고흥작은영화관	2016
19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시네마	2015
20	경상남도	남해군	보물섬시네마	2016

● 지역영상문화정책 예산 및 사업

1) 영화발전기금 지역별 지원 현황

- 지난 5년간(2010-2014년) 영화발전기금 지역별 지원 현황

<표> 해당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예산
2010	찾아가는 영화관운영	290
2011	찾아가는 영화관운영	300
2012	찾아가는 영화관운영	300

2013	찾아가는 영화관운영	300
2013	공유형 웹사이트개발 지원 사업	140
2014	찾아가는 영화관운영	400
2014	아시아영화학교	2500
2014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	638

<표> 영발기금 지역별 지원현황(단위: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징수액계	징수대비 지원비율
서울	290	300	300	300	400	1,590	62,941	2.54%
경기					24	24	44,168	0.05%
강원					9	9	4,407	0.20%
충북						0	4,766	0.00%
충남				35		35	5,398	0.65%
경북						0	5,726	0.00%
경남				35	8	43	9,826	0.44%
전북				35	158	193	5,460	3.53%
전남						0	3,182	0.00%
제주						0	1,629	0.00%
부산					2,500	2,500	16,184	15.45%
대구						0	11,499	0.00%
대전						0	7,542	0.00%
울산						0	4,174	0.00%
인천				35		35	10,288	0.34%
광주						0	7,477	0.00%
세종						0	111	0.00%
계	290	300	300	440	3,099	4,429	204,328	2.17%

- 영화발전기금은 전국적으로 걸히는 반면, 지난 5년(2010~2014년)간 영화발전기금 중 지역지원 비율은 2.17%에 그치며, 부산아시아아카데미 지원예산 25억을 제외하면 0.94%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영발기금의 지역 환류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2)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 사업(문체부)

<표> 지역영상문화 관련 지원정책 현황

해당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비고
문화체육 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조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지원	지특회계	매칭비율 국비:지방비=5:5
	지역영상미디어센 터 활성화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대상 상영/제작/홍보 지원	국비 총 2억 원	2015년 기준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운영 5년차 이상의 지역영 상미디어센터 대상 노후장 비 교체지원	국비 총 1억 5천만 원	매칭비율 국비:지방비=3:7
	작은영화관 조성지원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지특회계	매칭비율 국비:지방비=5:5
영화진흥 위원회 (기반 조성본부)	서울영상 미디어센터 운영	영상문화 참여 활성화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영발기금 총 10억 5천만 원	2015년 기준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	작은영화관 대상 예술/독립 영화 기획전 운영 지원	영발기금 총 6억 5천만 원	2015년 기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영화관람 소외 지역 대상 영화상영회 지원	영발기금 총 4억 원	2015년 기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	장애인 영화관람 및 장애 인 영화제 지원	영발기금 총 9억 5천 2백만 원	2015년 기준

*출처: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자료집, 재인용

-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있다기보다 정책적 필요와 지역의 수요에 따른 사업 개발이 지엽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여전히 참여와 제작보다는 향유 확산(격차 해소)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주종을 이룸
- 일관된 지원 체계 및 예산 전달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관련 정책 기관, 실국별 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 영상문화의 확장과 변화에 따른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영상산업 활성화의 하부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음

IV. 지역영상문화 정책 진단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법률 및 법체계 보완

-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행체계, 재정, 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의 실효성과 체계성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지역영상문화 지원과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법률체계와 위상이 미비함.
 - 영비법 개정을 통한 보완을 고려할 경우, 영상문화교육시설에 대한 정의와 범주에 대한 규정을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설립 확대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법적근거/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 지역민의 영화향유권강화를 위하여 국비 및 지방비 등 정부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조성/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의 경우, 그에 걸맞은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장기적 발전전망 도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함
 - 영비법 개정을 통한 보완을 고려할 경우, ‘공공상영관’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이의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영상문화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 지역영상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정비/체계화 필요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한 영상문화활성화 관련 사업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 ‘영상산업 진흥(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단위사업명칭과 세부사업의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문화진흥’ 영역을 별도 신설/체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내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예술교육과, 미디어정책과 등 영상문화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 간 정책협의/조율 필요
 - : 문화예술교육과의 토요미디어문화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역미디어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이 최근 3년 간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로 지원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사업추진으로 높이 평가된 바 있음

: 현재, 문화예술교육과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정책과) ‘지역미디어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폐지되고 ‘미디어교육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음. 해당 담당과의 사업추진체계의 고도화/정비에 따른 판단일 수 있으나 전문적인 영상문화지원시설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연계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안 설계 및 집행이 차년도 세부추진 전에 협의될 필요가 있음

● 지역영상문화화정책 전달(순환) 체계 정비필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작은영화관 등 지역영상문화지원시설의 전국적 확산/확대에 따른 전국적 차원의 중간지원 조직 필요

; 현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및 작은영화관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방안(한국영상문화지원센터)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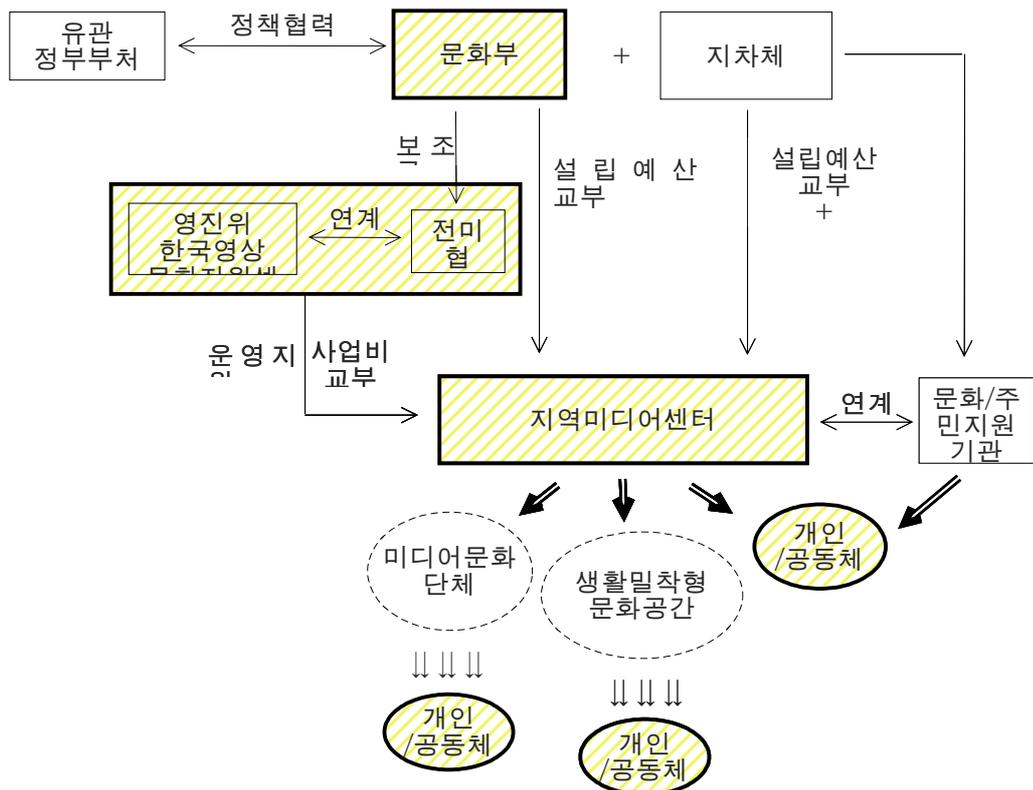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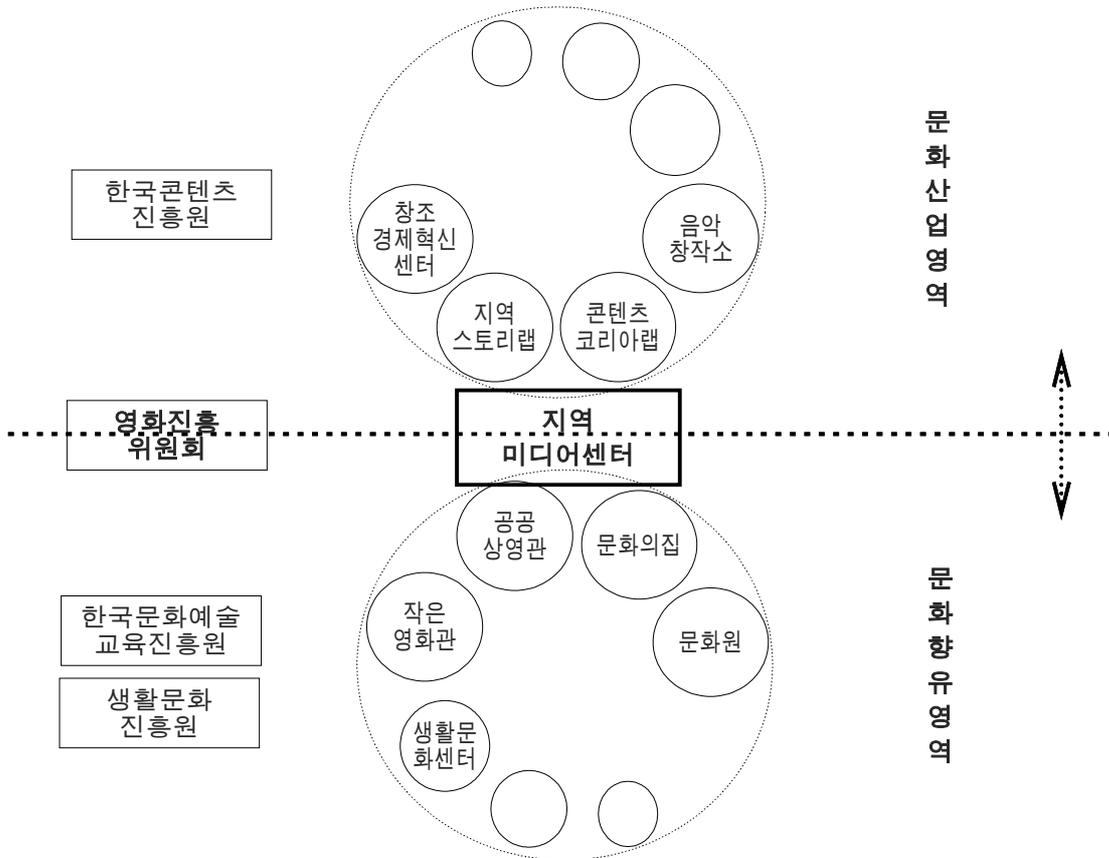


그림 지역영상문화정책 전달(순환) 및 지원 체계

- 지역영상문화활성화 관련 정책/사업이 지역문화/생활문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내 유관부처가 협의/조율을 필요. 또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문화콘텐츠의 생산/소비(향유)의 저변확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지역문화향유와 지역문화(콘텐츠)산업과의 가교로서 역할부여 및 정책조율이 필요함



3. 지원 및 실행시설 확대에 따른 정책 고도화 및 정비 필요

- 소규모 지역영상미디어센터(작은미디어센터) 설립 모델 개발과 설립지원 필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농산촌 소규모 미디어센터가 생기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현재, 화천군, 옥천군, 서천군, 강화군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완주군·인제군이 조성 중

임. 이에 대한 모델연구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 특히, 강화군의 경우, 작은영화관과 작은미디어센터가 동시에 조성운영되는 모델로서 주목할만한 사례이나, 해당 모델의 사전설계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의미와 잠재력이 확인/공유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4. 지역민 참여 영상문화 동아리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연차가 짧고 설립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인 지역민들이 영상문화 동아리를 구성해 자발적인 활동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이 지속적인 지역영상문화 활동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미비.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 2016년 8월 4일 시행되는 영비법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 후속사업 추진이 이에 해당됨
- 2016년 8월 4일 시행되는 영비법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 후속사업 추진이 이에 해당됨

5. 지역민의 참여적 영상문화콘텐츠 유통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다채널·멀티플랫폼 환경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콘텐츠 유통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문화의 공유와 소통 그리고 확산이 필요
- 산재한 지역문화콘텐츠의 원천자원·생산지원시설·유통기반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종합성을 제고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 참고문헌

- 곽현근(2009),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사례 연구-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 18권 제4호
- 김호균·김용민(2013), 「정부간 문화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문화정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
- 염신규(2015), 「지역문화진흥시대의 영상문화 정책 환경」, 한국영상문화제전 2015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발표문
- 유은혜(2015),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진단과 제언」,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홍교훈외 (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지정토론]

이영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지정토론]

제주지역 미디어센터
활동과 과제

고창균

(사)제주영상위원회 팀장





I. 들어가며

1980년대 이후 미디어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방송에 대한 공적접근(퍼블릭액세스)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해졌고, 2000년대를 맞아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미디어센터 설립이 러시를 이루면서 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 활동이 본격화 됐다. 미디어센터의 활동을 크게 나누라면 퍼블릭 액세스와 미디어 리터러시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각 지역 미디어센터가 처한 여건과 운영형태에 따라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육지와 떨어져 있고 또한 제주가 처한, 섬이라고 하는 자연적 환경으로 인해 미디어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타 지역과 조금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가적으로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무공해 산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여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센터의 경우 미디어센터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인 위 두 가지 외에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예비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1.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2006년 8월 ~ 2016년 6월 현재)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개관 (2006년 7월 31일)

- 미디어교육_ 총 335회 / 8,454명
- 체험 / 전학_ 총 275회 / 9,041명
- 센터방문객_ 총 154,573명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서귀포교육장 개설 (2014년 5월 31일)

- 미디어교육_ 총 64회 / 1,392명
- 체험 / 견학_ 총 14회 / 333명
- 센터방문객_ 총 9,801명

● 2016년도 운영실적

- 총 방문객_ 총 6,937명 (방문 및 체험, 견학, 미디어 교육)
- 영상 미디어 체험 및 교육_ 총 65회 1,560명
: 미디어교육 (41회 / 872명), 미디어체험 (24회 / 688명)

구 분	어린이청소년 교육		일반인 교육		장애인 교육		합 계	
횟 수	25회		15회		1회		41회	
교육 형태	자체 교육	위탁 교육	자체 교육	위탁 교육	자체 교육	위탁 교육	자체 교육	위탁 교육
	4회	19회	9회	4회	0회	0회	13회	23회
총인원	649명		209명		14명		872명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장애인	합계
미디어교육	179	470	209	14	41회 / 872명
미디어체험	633	20	20	15	24회 / 688명

2.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 현황

●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 어린이 미디어교육/어린이 영상제작체험 교실/어린이 영상캠프/어린이 진로체험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 자유학기제 교육 / 청소년 영상미디어 제작교육 / 청소년 영상교류캠프
- 방과 후 및 특기적성 교육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일반인 교육

- 일반인 영상제작 기초입문과정/영화매니아를 위한 전문가 과정/애니메이션 제작과정
- 특수효과 조명장비 활용교육/사운드디자이너 교육/장애인 영상미디어제작교육/ VR·AR제작과정/드론촬영 교육/타임랩스 촬영교육 등

3.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조례 제정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6년 4월25일 제정 발효)

●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화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의 활용능력을 높여 문화격차의 해소와 영상문화를 진흥하고 영상콘텐츠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영상인재 발굴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상미디어센터 등 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영상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및 문화향유권 확대 지원사업
2. 도민의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교육사업
3. 영상 전문인력 양성 또는 창작 지원사업
4. 지역공동체 영상미디어 활성화 사업
5. 영상관련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
6. 유관기관 및 단체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7. 지역교육장 운영사업
8. 그 밖에 영상문화 관련 도민활동 지원 또는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4. 제 언

-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개관한 지 만 10년이 지남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욕구에 미흡하여 대대적인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이 시급함.(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부분적인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조례에서도 미디어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어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이 시급함.
- 지역별, 계층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가 요망됨.

[지정토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의 역할

신호진

(재)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팀장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에 입각한 생활문화 인식확산

생활문화의 개념이 문화정책에 처음 등장할 때에는 생활문화는 주로 문화향유 및 참여적 문화활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전문 예술에 대한 관람기회와 관람률을 높이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의 문화복지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문화콘텐츠산업 또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거나 정치적 선전의 수단, 소비의 대상,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예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동은 교육받은 시민계층이 확대되어 예술 향유 계층이 증가하면서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유튜브, 페이스북 등 상호적 매체기술이 함께 발달하면서 **media literacy**와 **communication** 기능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일상적 삶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하고 창작·발표 등에 직접 참여(participation)하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에 입각한 문화활동으로 이어지고,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생활문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생활문화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의 정의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생활문화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다. 곧 생활문화 활동은 주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문화적 활동이다.

지금에 생활문화 활동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현대인이 직면한 소외, 공동체의 붕괴, 불안과 고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문화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또한 2000년대 초반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 개인의 활동, 즉 개인의 전문적 기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문화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영상미디어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영상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높은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시설 범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포함한 것 또한 주민들이 영상미디어를 매개로 한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 표현으로 이어지는 일상적 문화활동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생활문화정책

생활문화정책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 생활밀착, 주민주도 방식으로 전환되며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함께 국민 문화체감확대를 위한 생활 속 문화 확산의 정책과제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시설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의 근거를 기반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를 위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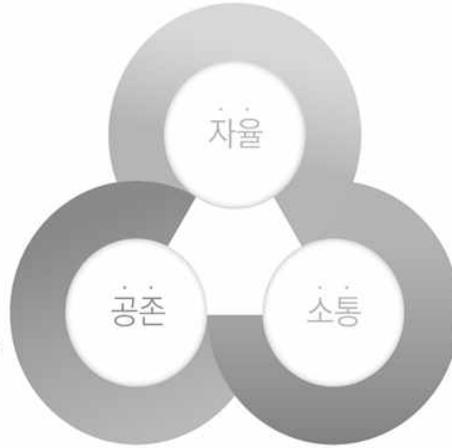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14년~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 17개 광역시도 총104개 선정(2016. 6월 현재 40개 개관 운영 중)

● 생활문화센터 운영원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공간	새로운 자기표현과 창조의 공간	관계형성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이 주인인 주민참여 문화공간·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및 장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의 학습, 체험, 생산의 공간· 삶의 가치와 재미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일상의 문화, 지역의 생활문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간 관계 맺기·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문화가 형성되고 축적되는 장

지역주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성별, 연령, 계층과 관계없이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
장르 중심의 활동, 장르와 관계없는 활동 모두 가능
지역주민의 삶과 연결된 다양한 생활문화활동 진행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현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기동성, 유연성 확보
관계 중심을 둔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 생활문화센터 유형

기본공간	생활권형	거점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동호회 등)을 위한 공간지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생활문화동호회 형성 지원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 주민 상호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체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형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능 및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등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 생활권 시설에서 지원하지 어려운 생활문화 활동, 창작 및 발표 등의 공간 지원
위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시·군·구 단위로 조성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200㎡ 내외 기본공간 + 필요한 권장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1,000㎡ 이상 기본공간(다목적홀, 공연장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의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동체공간 (50㎡ 이상) 주민자율공간 (50㎡이상, 방음실 최소 1개 이상) 공동체 사물함 (25㎡ 이상) 화장실 사무실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동체공간 (50㎡ 이상) 주민자율공간 (50㎡이상, 방음실 최소 1개 이상) 공동체 사물함 (25㎡ 이상) 화장실 사무실 창고 다목적홀 (150㎡ 이상) 공연장 (300㎡ 이상)
권장공간 (특성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놀이방 공동체 부엌 스튜디오 (녹음실, 영상편집실) 공동체공방 야외공연장 및 활동공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생활문화정책의 현실

생활문화센터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가지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공통적 역할은 문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문화적 가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생활문화센터보다도 앞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확산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썩 좋은 것만은 아닌 듯하다.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생활문화가 법적으로 규정되고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생활문화시설 조성 등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일부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법적 위상 및 지역 내 타 생활문화시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례로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의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동의 선진적 활동을 해왔던 문화의집과 지방문화원 등과의 정체성 및 관계 설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몇몇의 지역은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현재는 지역 내에서 각각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역할에 서로 협의를 통해 지역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정책적 수단으로 정책 전달체계 확립에 있어 생활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정책 지원의 집중을 통해 각각의 생활문화시설들과의 협력체계 및 공통적 지향점을 도출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활문화진흥원의 법적 위상 정립이 안 되어 있어 여러 모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활문화가 문화융성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당국 및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과 지역에서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규(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현안사항에 항상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제시되어 있는 생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작은도서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다양한 생활문화시설들이 지원을 받아, 저마다의 특성이 담긴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는 다양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 및 수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2015년 예산은 오히려 줄거나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아예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대상의 폭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마무리

앞서 발제자 선생님들의 원고를 보면 지역영상문화향유권을 위한 법 개정에도 있어 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에 현실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설립 주체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제각각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지역 특성화에 있어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점일 수 있으나 향후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산을 위한 공통적인 담론 및 지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 내의 다양한 공공문화시설 및 주체들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 내에 많은 공공문화시설들을 통해 지역주민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정책이 부각됨에 따라 생활문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문화진흥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으나, 오히려 각각의 공공문화시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각각의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진 생활문화 사업 아닌 지역은 없고 주민은 없는 이슈로만 다가가서는 생활문화는 오히려 지역문화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도 지역문화진흥법과 영비법의 관계 설정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 앞서 말한 것처럼 모호함이 많다. 영비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내용으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반드시 지역문화진흥법과의 관계를 잘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 전문성을 통해 다른 시설과의 연계가 된다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영상문화정책은 현대사회 구조 변화에 있어 지역주민의 문화민주주의에 입각한 생활문화정책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너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정토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

최성천

원주시 문화예술과장





I. 원주시 차원의 영상문화 관련 사업 현황 개괄

원주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는 2009년 개관하여 이제 6년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상영, 공동체미디어로 이뤄진 사업 분야는 선순환 구조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분야에서는 문화부와 전미협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토요미디어 문화학교 수료생들이 청소년 영상동아리를 만들고 지역의 청소년들과 힘을 합쳐 장편영화를 찍어냅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을 통해 지역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CF를 제작하는 청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상영분야에서는 매월 2편씩 독립예술영화를 개봉하고 원주시민이 중심이 된 상영기획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무료 상영회를 포함하여 매년 평균 6,000여 명의 관객들이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영화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미디어 분야는 원주의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 이웃 흥성군의 흥성 섬강라디오를 합쳐 원주권에는 6개의 공동체라디오가 방송 중이며 지역민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자체 동아리 운영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라디오 사업 기획, 교육, 스튜디오 공사 분야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II. 원주시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 1. 인프라 관련

2009년 개관 이후 끊겼던 중앙정부의 지원은 2015년 노후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 센터들 중에서도 상영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로 독립예술영화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지만 2015년 문체부 지원과 원주시 재원을 합쳐 DCP 빔프로젝트를 구입, 변화하는 배급 상황과 극장 시설에 걸맞은 상영 시스템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개관 이후 노후화 되어 가는 장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시의 지원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인프라 분야에서 장비 및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이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분야와 달리 센터 직원들은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처지는 전국의 미디어센터 직원들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사업과의 연계

영상문화, 영상미디어센터는 이제 지역의 과제와 따로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지역의 여러 공동체와 협업하면서 지역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1960년대 이후 5개의 극장이 있었으나 멀티플렉스 극장이 들어서면서 폐업과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영상미디어센터가 마지막 남은 극장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되살려 보자는 여론을 만

들어 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문화 그리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뤄질 때, 보다 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항꾸네 마을미디어’는 마을의 문제, 아이들 놀이공간의 부재, 마을도서관 건립 등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 취재하고 제작하면서 공동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을 엮어 주는 다리로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중앙정부의 영상문화 정책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3. 지역 군 단위 지원 사업

영상문화는 도심지역 시민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원주는 같은 생활권인 횡성 지역까지 지원 지역을 넓히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 재원으로 운영되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 뿐 아니라 지역의 상황에 맞는 미디어교육, 공동체미디어 지원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시 단위 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군 단위 소규모 미디어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횡성여성농업인센터는 지속적인 영상교육을 통해 서울여성영화제 상영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도심지역 영상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4. 마을공동체, 공동체미디어 그리고 라디오

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 목적에는 주민들의 미디어 격차 해소라는 커다란 목표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등장과 함께 일부 계층들이 미디어를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독점하면서 미디어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 격차는 정보화 사회에서 회복할 수 없는 차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이런 격차를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상영지원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통해 도서관 기능과 버금가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마을공동체 내지는 공동체 미디어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원주시에선 영상, 사진, 독립잡지 제작 등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공동체(7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기반의 마을공동체로서 공동체라디오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활동을 진행한 다큐멘터리 공동체 <다큐나무>는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독립다큐멘터리 상영을 통해 지역 상영문화의 다양성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원주다큐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영화 단체가 전무한 강원지역에서 지역 미디어제작자의 후원자 역할을 떠맡아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 부분에서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4년여간 운영되어 온 원더풀 라디오와 원주시 태장2동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흥양천공동체라디오가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는 지난 6월 공동체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여러 지원사업 중 하나로 공동체미디어 분야를 포함시켜 미디어를 중심으로 모인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는 ‘주민 개개인의 미디어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서 ‘미디어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 육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을공동체 및 미디어공동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토론]

지역문화 아카이브
활성화를 기대하며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I. 지역문화 활성화의 배경

지역문화는 관련법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활동의 근거를 확보하면서 그 폭을 넓혀오고 있다. 법의 발전과 함께 지역문화 활성화의 배경이 되는 사회 환경 요인을 돌아보면 IT의 대중화, 문화적 환경의 변화, 자기 존재의 자각과 삶의 질 향상의 열망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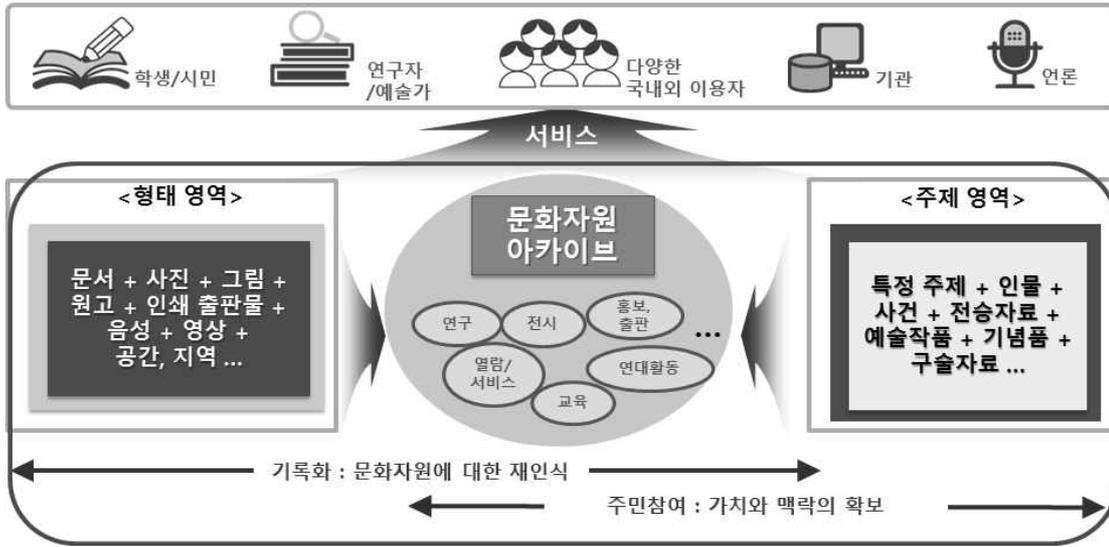
IT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화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시간 쏟아지는 대용량의 정보는 그 결과 값과 성과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배경과 맥락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동체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개인과 집단에게 경험과 기억이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일상이 소소하지만은 않다는 자각에서 출발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일상의 요구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II.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필요성

아카이브는 기록을 폭넓게 확보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 쉽게 정리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며, 폭넓게 나누기 위해서 기능하고 존재한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자원의 아카이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체계적인 아카이빙 없이 원활한 유통과 공유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물

론, 아카이빙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1> 문화자원아카이브 개념도

‘일상의 이야기’라는 재료를 아카이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바를 말을 통해 외화한 ‘이야기’는 그래서 고유하다. 그 고유한 소재는 역사의 기초자료가 되며 다양한 예술작품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사실(fact)’을 찾으려는 노력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은다는 것은 ‘서사적 진실(truth)’을 꾸준히 축적해 가는 과정이다. 즉,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의 해답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묵직한 무게감과 힘이 있다. 책, 사진, 그림, 영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재가공 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이야기에서 큰 무게와 힘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야기들이 은근히 모였을 때 보여주는 무게와 힘은 가히 폭발적이다. ‘무게와 힘’이란 감동이나 교훈, 삶의 지혜 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이야기집단(Storycorps)의 활동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어떻게 재가공 되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점이 많다. 이들에게는 아카이빙 과정과 이를 공유하는 기반장치가 있다.(www.storycorps.org)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문화재단의 메모리인[人], 원주문화재단과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지도교수: 한상정)의 원주중앙시장 상인 구술 및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자서전쓰기 활동’ 등은 이야기를 모은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아카이빙에 대해서는 인식이 미미하다. 그나마, 서울문화재단의 결과물은 편집되어 시민청 한쪽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나, 기획자의 의도에 의한 일방적인 서비스일 뿐 검색이나 활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료와 자료가 갖고 있는 맥락을 체계적으로 관리(아카이빙)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료는 흩어지고, 찾아서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리하여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만 한다.

Ⅲ. 아카이브의 과제

아카이브는 단순히 수집과 저장 그리고 공급만 하는 것은 아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분류체계를 활용도 높게 구성해야 하고, 기술(Description)도 유용하게 해야 하며, 자료의 상태와 가치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하고, 소장자료의 이력관리 및 안전한 보존처리 또한 필수적이다.

아카이브는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운영주체, 자원, 저장 공간(온/오프라인)이 필수적이어서 민간영역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공공영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문화자원은 속성상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문화자원이 개인과 민간차원에서 공공영역으로 장을 이동하면서 겪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결국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자원 아카이빙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건 없는 적극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NOTE

NOTE